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
공 시 최 고

사 건 2008카공 58 공시최고

신청인 이기만

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1180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 최고기일인 2009. 3. 16. 14:00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8년 12월 8일

판 사 신 영 희

<증서의 표시>

○ 자기앞수표번호

다가 00129835, 다가 00129836 2매

○ 금액 : 각 500,000원권 2매

총금 1,000,000원

○ 발행일 : 2008. 12. 2

○ 발행인 :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가조지점